'25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5. 05. 23.]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 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5.05.23.(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4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모집안내

주택열람	입주신청	당첨자 가계약		자격검증	본계약
희망주택 개별방문 (지정기간(3일))	▶ 등기우편 접수 ('25.6.10~'25.6.13)	▶ 당첨자 발표 (07.03)	가계약 (07.09~07.11)	▶ 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자 소명접수 (약 5~6주 소요)	▶ 계약서 작성, 잔금 납부·입주 (개별안내)

※ 소요 기간 등은 외부기관과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개방 기간 : 2025년 05월 30(금) ~ 06월 1일(일)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문의 : 별도안내 (붙임3번 확인)

■ **신청기간 : 2025년 06월 10일(화) ~ 06월 13일(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매입임대 공급센터) 가능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매입임대 공급 남부센터 (☎031-214-8463~4) - 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오산/용인/평택/화성

매입임대 공급 동부센터 (☎031-567-2486~7) - 구리/남양주/양평/여주/광주/이천

매입임대 공급 북부센터 (☎031-852-4208~9) - 고양/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

* 금번 공고는 선착순 모집이 아닌 해당 신청 기간내에 접수 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비 서류나 보완 서류가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공급 신청서에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가 없거나 3회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총 168호** (자세한 사항은 주택 내역 참조)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조건은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재계약 기준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9페이지 「7. 유의사항」의 임대조건 참조 ※ 월평균소득 100%초과 150%이하자의 경우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기존 계약 조건의 80% 할증 적용됨.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지침」 제9조제1항 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감액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보증금-(기본임대료x24)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기타 사항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4. 입주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5.05.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배우자포함) 및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

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150%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중위소득 50%
1인 가구(20%p+)	5,397,246원 이하	4,317,797원 이하	3,238,348원이하	1,196,007원이하
2인 가구(10%p+)	8,215,505원 이하	6,024,703원 이하	4,381,602원이하	1,966,329원이하
3인 가구	11,440,460원 이하	7,626,973원 이하	5,338,881원이하	2,512,677원이하
4인 가구	12,867,132원 이하	8,578,088원 이하	6,004,662원이하	3,048,887원이하
5인 가구	13,546,572원 이하	9,031,048원 이하	6,321,734원이하	3,554,096원이하
6인 가구	14,599,629원 이하	9,733,086원 이하	6,813,160원이하	4,032,403원이하
7인 가구	15,652,686원 이하	10,435,124원 이하	7,304,587원이하	4,494,214원이하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단, 완화소득150%와 자격요건 참고사항인 중위소득 50%는 해당없음)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소득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임.

구분	소득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순위	세부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 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하 "저소득 고령자"로 한다)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선정순서	순위 → 가구원 수 많은 순 → 미성년 자녀 많은 순 → 추첨

5. 공급 일정 및 선정절차

■ 입주 신청

• 공급신청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접수기간 중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됨

■ 선정절차

신청접수 (동, 호지정 신청) ⇒ 당첨자 선정 및 가계약 (예비자 4배수 모집) ⇒ 무주택·소득 자격검증,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적격자 본계약

• 당첨자 선정후 가계약 진행, 가계약후 자격검증 진행함
  – 예비자 포함 4배수 선정하며 가계약은 1번 당첨자만 진행, 자격검증은 예비자 4명 모두 진행함
• 해당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당첨자 자격검증후 적격판정시 정계약 진행, 부적격시 다음 적격판정 받은 예비자 순번 정계약 진행

■ 접수일정 및 접수처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접수처	
2025. 06.10.(화) ~ 06.13.(금)	등기우편 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 담당자 앞 ※ 2025년 06월 13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신청 가능
(우편접수처와 센터별 방문접수처 주소가 상이하므로 주의 요망)
· 방문접수 기간 : 2025.06.10.(화) ~ 06.13.(금), 10:00~16:00

센터	지역	정보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문의전화
남부 센터	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 /오산/용인/평택/화성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031-214-8463~4
동부 센터	구리/광주/남양주/양평/여주/이천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경기행복주택 상가 103호	031-567-2486~7
북부 센터	고양/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회의실	031-852-4208~9

- 주택개방 및 열람은 3일간 해당 시간까지만 개방할 예정이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습니다.
- 접수시간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변경 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개별 연락 등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 가계약일, 본계약일

당첨자 발표일	가계약일	본계약일
'25.07.03	'25.07.09~'25.07.11 (장소 : 해당센터 방문)	별도 통보

- 가계약 절차 : ① 가계약금 30만원입금 ② 가계약서 작성 ③ 가계약금 입금계좌 및 서류 : 별도 통보
- 가계약자 자격검증후 적격 판정시 본계약 체결(별도 통보 예정), 부적격 판정시 본계약 불가
- 가계약자 부적격으로 본계약 불가시 다음 적격 판정 예비신청자 본계약 체결(별도 통보 예정)
- 본계약 체결된 주택의 남은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단, 예비순번까지 모두 소진된 미계약 세대가 발생시 미계약 세대와 가장 인접한 주택 신청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가 됩니다.
- 위처럼 우선순위 부여자에게 미계약세대를 유선 안내할 예정이며 접수시 작성한 **연락처로 3회 안내 후 통화 불가시 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번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6.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하여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② 본인 도장 날인본 제출서류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날인본 제출서류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날인본 제출서류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만 인정. 생년월일만 기재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첨부시 가능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공급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행정복지센터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로 발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순위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 · 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접수 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신청자 작성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7. 유의사항 (신청 전 필독)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주택열람</td><td>•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관리비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td></tr>
<tr><td>임대조건</td><td>•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입주자의 소득, 무주택여부, 자산등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table>
<tr><th rowspan="2">입주자격</th><th rowspan="2">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th><th colspan="2">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th></tr>
<tr><th>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th>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th></tr>
<tr><td rowspan="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td><td>52.5%초과 55%이하</td><td>10%</td><td>20%</td></tr>
<tr><td>55%초과 65%이하</td><td>20%</td><td>40%</td></tr>
<tr><td>65%초과 75%이하</td><td>40%</td><td>80%</td></tr>
<tr><td rowspan="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td><td>73.5%초과 77%이하</td><td>10%</td><td>20%</td></tr>
<tr><td>77%초과 91%이하</td><td>20%</td><td>40%</td></tr>
<tr><td>91%초과 105%이하</td><td>40%</td><td>80%</td></tr>
<tr><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td><td>100%초과 105%이하</td><td>40%</td><td>80%</td></tr>
<tr><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초과부터 150%이하까지</td><td>–</td><td>80%</td><td>갱신불가</td></tr>
</table>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 자동차가액 초과 및 주택소유의 경우에는 1회 유예 없이 즉시 퇴거 대상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 100%초과 150%이하자의 경우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기존계약 조건의 80% 할증 적용됨.</td></tr>
</table>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공고문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가계약 및 계약안내	• 선정된 예비입주자 1번에게 가계약체결을 별도 안내합니다. 가계약 체결후 자격검증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4번까지 자격검증을 진행하며 적격판정을 받을시 예비입주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로 임대마감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 및 예비순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예비순번까지 모두 소진된 미계약 세대가 발생시 미계약 세대와 가장 인접한 주택 신청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가 됩니다. • 위처럼 우선순위 부여자에게 미계약세대를 유선 안내할 예정이며 접수시 작성한 **연락처로 3회 안내 후 통화 불가시 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번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도시기금을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유형별(오피스텔 등)로 개별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의 수준이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사전 입주청소는 불가하며, 잔금납부 후 열쇠수령 이후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별로 가전제품 등의 설치 여건이 상이하며 개방시 확인된 현상태로 공급되므로 추가 설치 등은 없습니다. 또한,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은 시설물 노후에 의한 고장을 제외한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바닥이 강화마루일 경우 재료 특성 및 시공 특성으로 인해 보행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8. 문의처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구 분		위 치
남부 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 문의전화 : 031-214-8463~4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약 1km (이비스 앰배서더 방향으로 도보 1분) ② 버스 : 수원시청역2번출구.벽산그랜드코아 정류장 일반버스 13-1, 80, 99-2, 202 간선버스 3002, 4000, 4500	
북부 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회의실 •☎ 문의전화 : 031-852-4208~9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의정부 경전철> 어룡역 2번 출구에서 약 760m ② 버스 : - 낙양물사랑공원앞 정류장 간선버스 107 일반버스 3, 11 마을버스 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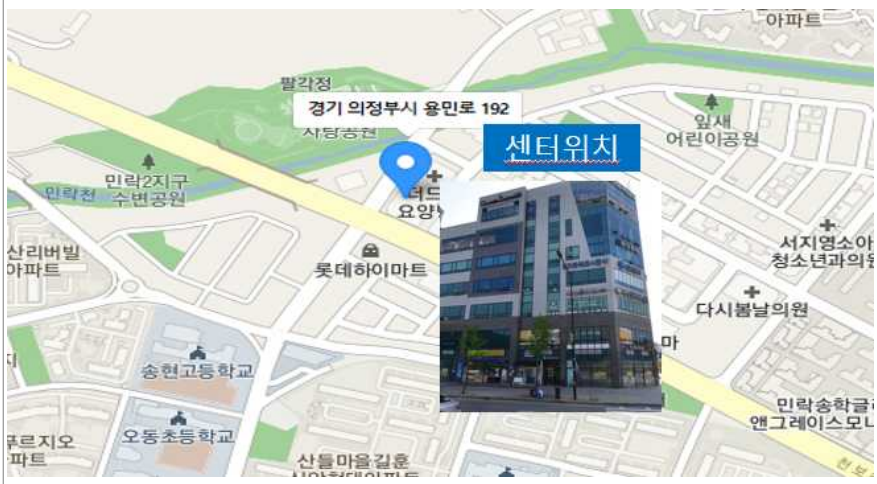
동부 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경기행복주택 상가 103호 •☎ 문의전화 : 031-567-2486~7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8호선 다산역 4번 출구 도보 1분 직선거리 약 200m ② 버스 : 일반버스 땡큐50, 땡큐10 34, 76	

※ 지도출처 : 카카오맵

2025. 05. 23.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①산재보험 ② 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 주택	소재지			주택명		
	호	층 수	방 수	면 적(㎡)		
				전 용	공 용	임 대 (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현거주지)					
	전화번호	( ) - ( ) -		가구원수 (태아포함)		
신 청 자 격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무주택					
유의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세대에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후 주택변경 불가합니다. 4. 주택별로 가전제품 등의 설치 여건이 상이하며 개방시 확인된 현상태로 공급되므로 추가 설치 등은 없습니다. 또한,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은 시설물 노후에 의한 고장을 제외한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 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장기미임대 입주자모집」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위임인(신청인)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